

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
상·하수도요금에 체납된 아래의 급수전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중지와 폐전) 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체납된 상·하수도요금 고지서 및 직권폐전 예고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가 불가능하여,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(의견청취)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3. 공시송달(직권폐전예고) 내용

(단위:원)

연 번	수용가 내역			급수전내역		체납내역		소유자	
	급수전 소재지	성 명	고객번호	구경 (mm)	업종	기간	금액	주소	성명
1	녹산산단 407로48 (송정동1662-1)	㈜승진 마린테크	400639 -100	20	일반	'16.10 ~ '17.12	2,710,030	녹산산단 407로48 (송정동1662-1)	㈜승진 마린테크

2018. 02. 23.

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강서사업소장

